

[기술특급 산림기술자 법정교육 CPD 인정기준]

□「기술사법 시행령」[별지 제10호서식] 교육훈련 이수확인증의 형태(코드)

	구	분	산림기술자 법정교육(전문) 인정여부	비고
기	본	윤리·안전	전체인정	
		기 타	*일부인정	CPD 문구가 명시되어있는 교육
				(분기 또는 분회 교육[CPD] 등)
전문교육			전체인정	
	TIS	으하스	*일부인정	CPD 문구가 명시되어있는 교육
	~[김	울학습		(분기 또는 분회 교육[CPD] 등)
	기	타	*일부인정	CPD 문구가 명시되어있는 교육
				(분기 또는 분회 교육[CPD] 등)

※ 비고

- 1. 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4조제1항 [별표 1]3의나에 따라이수한 교육·훈련 시간에 해당하는 전문교육 시간 면제
- 2. 「기술사법 시행령」[별지 제10호서식] 교육훈련 이수확인증에서 인정되는 교육은 이수학점으로 산림기술자 교육·훈련 시간 인정
- 3. 『산림기술자 교육·훈련에 관한 세부사항』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·훈련 시간에 해당하는 전문교육 시간을 면제하므로, 해당 교육기간에 이수한 교육만 인정 가능
- 4. 「기술사법 시행령」[별지 제10호서식] 교육훈련 이수확인증에 따른 취득학점 인정 시형태(코드) '전문교육' 및 '기본-윤리·안전' 외 교육은 CPD 문구가 명시되어있는 교육 (분기 또는 분회 교육[CPD] 등)에 한하여 산림기술자 법정교육 범위의 전문교육 인정